

任委員會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特別市委員會條例를 改正하므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事務局設置條例도 改正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專門委員 定數도 7名에서 10名으로 3名을 增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條例 改正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는 委員會 發議로 與野가 滿場一致로 議決한 事項이기 때문에 議員 여러분께서도 本會議에서 滿場一致로 議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님! 緊急動議가 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議長 金瓌會 緊急動議요? 이 案件에 대해서 입니까?

(「아닙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 案件 처리한 다음에 하시죠. 金寅東 委員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議長 金瓌會 緊急動議하신 것은 條例案 통과시켜 놓고 하시죠. 관계되는 것 아니죠?

(「네」하는 議員 있음)

(參照)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1年 8月 8日  
運營委員長提出

1. 提案經緯

- (1) 運營委員會 曹相彩 議員등 10人이 成案하고, 同 10人의 議員이 書面動議로 提出한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 (2) 第49回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91. 8. 8)에서 審査한 結果 이를 當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고 本會議에 提

案하는 것임.

2. 提案理由

- (1) 서울特別市委員會 條例의 改正('91. 7. 12 공포)으로 7個 常任委員會를 10個 常任委員會로 3個의 常任委員會가 증설됨에 따라 關係條文의 整理와 이에 따른 專門委員 定員을 3名 增員하고자 하는 것임.

3. 主要骨子

- (1) 委員會條例 改正에 따른 關聯 條文整理 : 7個委 → 10個委 (案 第7條)
- (2) 專門委員 定員을 3名 增員 : 7名 → 10名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자료 조사 및 의안정리

<별표>의 일반직 4급 정원란 중 "10"을 "13"으로, 정원내용관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상당 7"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상당 10"으로 하고, 일반직 소계 정원란 "54"를 "57"로, 총계란 정원 "110"을 "11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계속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안담당관) 의안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의안담당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자료조사 및 의안정리	2.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자료조사 및 의안정리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2.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등에관한條例案

(14時 10分)

○議長 金瓌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議會 議員報酬 등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運營委員會 金寅東委員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委員長 金寅東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議會 議員報酬 등에 관한 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2條第1項의 地方議會 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와 旅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日費는 會期中에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規定되어 있으며 同條第2項에는 第1項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기준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또한 同法施行令 第5條第2項의 地方議會 議員에게 支給하는 日費의 支給기준은 [별표4]에 그리고 旅費의 支給기준은 [별표5], [별표6]에서 定하는 範圍안에서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條例로 定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議員報酬 등에 關한 法 및 施行令에서 規定된 것을 제

의하고 이 條例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條例制定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特別市議會 議員報酬 등에 관한 條例案이 이것도 運營委員會에서 與野 滿場一致로 전부 議決을 보았습니다. 本會議에서도 滿場一致로 議決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瓌會 金寅東委員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議會 議員報酬 등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議員 여러분의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異議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등에관한條例(案)

'91年 8月 8日

運營委員長提出

1. 提案經緯

(1) 運營委員會 趙文晉 議員등 10인이 成案하고, 同 10인의 議員이 書面動議로 提出한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등에관한條例(案)를